

시애틀 형제교회 내규 (최종 수정안-11/4/2023)

제 1 장 총칙

시애틀 형제교회는 미국 장로교단 (Presbyterian Church, U. S. A.)에 소속된 교회로서 이민 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리집사와 권사제도를 유지하고, 그 밖에 교회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본 내규의 목적이다. 시애틀 형제 교회는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의거하여 교단헌법이 교회에 허락한 재량과 권한에 따라 동성결혼의 집례나 이를 위한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내규 밖의 규정은 미국 장로교 규례서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 S. A.)에 따라 정치, 권징, 예배 등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활동교인

활동교인은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공식예배와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와 헌금생활을 하며, 교회 규정을 준수하고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자를 말한다. 활동교인은 18 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활동교인에 관한 규정은 미국 장로교 규례서에서 정한 활동교인에 관한 규정(G-1.0402)에 준한다.

제 3 장 서리집사

교회의 제반 업무처리의 편의와 원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서리집사 제도를 둔다.

1.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는 세례(침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등록 후 1년을 경과해야 한다.
2. 서리집사 임명은 1년, 2차 이상하지 않는다.
3. 서리집사 임명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출석: 주일성수 하는 자
 - (2)헌금: 교인으로서의 헌금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
 - (3)인격: 신앙 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고 성서의 원리대로 독신자이거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로서 교우 간에 덕을 세우고 있는 자
4. 서리집사 대상자는 교회 행정실에서 준비하여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한다.
5. 서리집사는 헌금의 수납, 성가대 봉사, 차량봉사, 기타 당회가 허락하는 제반 사역을 담당한다.

제 4 장 안수집사

제 4-1 조. 안수집사의 임직

안수집사는 추천 위원회에서 다수 공천하며 당회에서 추천인원을 확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마친 후 교회에서 안수하여 임직 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임직자 훈련**을 원만히 수료치 못한 경우에는 일회에 한하여 그 다음해에 교육받을 기회를 준다. 안수집사 공천은 추천위원회에서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64세 혹은 그 이하인 자를 선출한다. 안수집사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휴무는 실시하되 재임직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 4-2 조. 안수집사 자격

안수집사는 성경 또는 규례서에 정한 일반적 자격요건 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출석: 주일성수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교회 소정의 정규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자
2. 헌금: 십일조는 물론 통상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등)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
3. 인격: 성서의 원리대로 독신자이거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로서 교우 간에 덕망이 있는 자
4. 봉사: 교회봉사에 창의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
5. 영적 지식: 평소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본 교회 소정의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 program 에 참여한 자로 당회가 정한 임직자 자격요건에 합한자

- 6.교회 질서: 당회의 특별한 허락이 없는 한 당회가 인정치 아니하는 모임이나 단체에 참석치 않는 자
- 7.기간: 서리집사로서 2년 이상, 형제교회를 위해 충성한 자

제 4-3 조. 안수집사의 전입

본 교단의 안수집사가 타 교회로부터 본 교회로 전입해 왔을 때 이명인 경우는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본 교회 등록 일로부터 1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이 경과하고 제 4 장 제 4-2 조: 1-6 (1.출석, 2.헌금, 3.인격, 4.봉사, 5.영적 지식, 6.교회 질서)에 해당하는 성도는 안수집사에 피택 될 자격이 있다.

제 5 장 권사

제 5-1 조. 권사의 임직

권사는 추천 위원회에서 다수 공천하며 당회에서 추천인원을 확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교회에서 안수하여 임직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임직자 훈련**을 원만히 수료치 못한 경우에는 일회에 한하여 그 다음해에 교육받을 기회를 준다. 권사 공천은 추천위원회에서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4세 혹은 그 이하인 자를 선출한다.

제 5-2 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제 4 장 제 4-2 조: 1-6 (1.출석, 2.헌금, 3.인격, 4.봉사, 5.영적 지식, 6.교회 질서)에 해당하는 여자 성도로서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3년 이상 경과하고 45세 이상 되었거나 서리집사로 15년을 경과하고 50세 이상 된 여자 성도 이어야한다.

제 5-3 조. 권사의 임무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인심방, 구역관리, 병자위로, 새 교우 환대, 교회를 위한 기도 및 기타 당회에서 위임한 교회봉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4 조. 권사의 전입

권사가 타 교회에서 전입해온 경우,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본 교회 등록 후 2년이 경과해야 추천 받을 자격이 있다.

제 5-5 조. 권사회의 설치 및 운영

권사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6 조. 명예권사

65세 이상의 여자 성도로서 3년 이상 안수집사로, 또는 10년 이상 본 교회를 섬기며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성도들의 덕망을 받는 자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인준하며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교회에서 안수한후 교회에 봉사한다.

제 6 장 장로

제 6-1 조. 시무장로의 임직

시무장로는 본 내규에 의거 추천 위원회에서 다수 공천하며 당회에서 추천인원을 확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교회에서 안수하여 임직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임직자 훈련**을 원만히 수료치 못한 경우에는 일회에 한하여 그 다음해에 교육받을 기회를 준다. 시무장로 공천은 추천위원회에서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64세 혹은 그 이하인 자를 선출한다.

제 6-2 조. 시무장로의 자격

시무장로는 제 4 장 제 3 조: 1-6 (1.출석, 2.헌금, 3.인격, 4.봉사, 5.영적 지식, 6.교회 질서)에 해당하는 자로서, 남자는 안수집사로 4년, 여자는 본 교회에서 임직한 권사로 3년을 충성한 자이거나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시무연한이 통상 4년 이상이면 피택 자격이 있다. 전입 안수집사로서 본 교회의 안수집사가 된 경우에는 남자는 본 교회 안수집사로서 3년, 여자는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시무연한이 통상 3년이상이면 피택 자격이 있다.

제 6-3 조. 장로의 임기

시무장로의 시무 연한은 9년(3년임기 3회, 휴무 2년 제외)이다. 시무 중에 만 67세가 되면 그 해 연말까지 시무한다. 시무 임기를 마친 시무장로가 만 67세 이전이면 67세까지 장로로 계속 사역하며, 당회원과 시무장로의 담당사역을 제외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해서 정년까지 사역한다.

제 6-4 조. 장로의 전입

본 교단의 장로가 타 교회로부터 본 교회로 전입해 왔을 때 이명한 경우는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본 교회 등록 일로부터 1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이 경과하고 제 4 장 제 4-2 조: 1-6 (1.출석, 2.헌금, 3.인격, 4.봉사, 5.영적 지식, 6.교회 질서)에 해당하는 성도는 장로에 피택 될 자격이 있다.

제 6-5 조. 사역장로

현재 사역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 안수집사로서 본교회를 10년 이상 출석하면서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거나, 남자 서리집사로서, 본교회를 15년 이상 출석하면서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덕망을 받는 자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하며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교회에서 안수한후 교회에 봉사한다.

제 6-6 조. 명예장로

현재 사역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남자 안수집사로서 본교회를 10년 이상 출석하면서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거나, 남자 서리집사로서, 본교회를 15년 이상 출석하면서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덕망을 받는 자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하며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교회에서 안수한후 교회에 봉사한다.

제 7 장 정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은 67세로 하며, 시무 중 67세가 되면 그 해 연말까지 시무한다. 정년이 끝난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본인의 의사와 형편 및 본인이 받은 은사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제 8 장 직분자 추천 위원회 구성

직분자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노회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분자 추천 위원회는 시무장로 3인, 권사 및 안수집사 6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장로 3년, 권사 및 안수집사는 1년으로 한다. 위원 선출은 추천을 통해 당회가 지명하고, 공동의회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직분자 추천위원회는 당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투표를 통해 적정수의 임직자 후보를 당회에 추천한다.

제 9 장 재단 이사회

본 교회는 재산권의 주체로서 재단업무의 관리를 위해 재단이사회를 운영한다. 재단이사회의 임원은 이사장, 총무, 재무를 두며 당회에서 의결한다. 재단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재단이사회 이사는 당회원이 겸임하며 회원은 활동교인이다. 이사회는 당회와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교회를 위한 동산 혹은 부동산의 구매, 매각, 저당에 관계된 재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이 밖에 재단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미국 장로교 규례서에서 정한 법인체와 재단이사에 관한 규정(G-4.01)에 준한다.

제 10 장 성전 건물의 사용

제 10-1 조. 사용목적

본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혼식, 영결식, 기타 지역사회의 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0-2 조. 사용절차

1. 본 교회 등록교인은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결혼식을 위하여 본 교회 성전을 사용할 수 있다.
2. 기타 지역사회 봉사 차원의 사용일 경우 1일 이내의 사용은 담당 장로를 거쳐 담임목사 재량으로, 2일 이상 사용은 당회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제 10-3 조. 사용료

결혼식 등 개인이나 기관이 교회 공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미리 사용신청을 하고 당회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0-4 조. 변상 책임

사용자는 건물 사용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한 변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 11 장 묘지사용

제 11-1 조. 취지

본 교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19_____ 년에 형제교회 묘지 200 기를 구입하여 현재 형제교인에게 분양 중에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을 중지하고 실제로 상사를 당한 교인의 가족이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 확보한 묘지 분양이 끝날 때까지 분양한다. 단, 본 규정 발효당시에 이미 구입한 교인 또는 구입하기로 계약금을 납입한 교인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2 조. 자격

형제교회 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

12 장. 교회와의 이해상충

모든 직분자와 교회 직원 (교역자 포함), 그리고 위원회 혹은 부서팀은 교회와의 이해 상충이나 이해 상충의 가능성 내지는 이해 상충으로 비추어지는 어떤 상황도 피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누구라도 이해 상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한 토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3 장 성적비행 방지교육

교회는 매년 최소한 한차례 성적비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당회원, 직원 (교역자 포함)은 성적비행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며 교단 법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당회원, 직원은 6 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14 장 권징조례

모든 직분자와 교회직원 (교역자 포함)이 비기독교적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 당회 또는 활동교인 1/4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신입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5 장 캠퍼스 교회

15-1 조. 운영위원회

각 캠퍼스 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어 교회를 운영한다.

15-2 조. 직분자 추천

각 캠퍼스 교회는 자체 직분자 추천위원회를 두어 직분자를 추천하며 본교회 직분자 추천회와 함께 논의하여 당회에 추천한다.

제 16 장 부칙

1. 본 내규는 **2023년 12월 공동의회 통과 후 즉시 발효된다.** 2020년 공동의회에서 통과, 시행되어 오던 내규는 본 내규 발효와 동시에 무효로 한다.

2. 당회는 매년 1월에 임직자 자격요건, 활동교인의 수, 그리고 교회 사용료를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